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3.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평동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강동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 휴식 및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대민행정 서비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구)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를 추가 매입하여

현재운영 중인 농촌체험 농장 및 공동 벼육묘공장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공동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 역사문화디지털센터를 건립하여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고 성리학 학맥을 중심으로 인물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新·舊가 조화된 역사 문화자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규 모 : 92,288m²
- 기준가격 : 1,807,063천원(가 감정가 기준)

○ 건 물 (신 축)

- 연 면 적 : 4,605m²
- 기준가격 : 16,29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구평동 공공용지 매입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구평동 980번지
- 면 적 : 1,435m²
- 기준가격 : 603,373천원(조성원가 기준)

※2009.4.15 도시계획용도 공공용지로 지정

□ 구)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매입(추가)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1844-1번지의외 1필지
- 면 적 : 1,012m²
- 기준가격 : 22,634천원(가 감정가 기준)

※ 기 매입현황(경상북도 교육청 소유분) - 2011.3.31

- 위 치 :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 824번지의외 2필지
- 면 적 : 토지 8,361m², 건물 697m²
- 매입가격 : 292,837천원

□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남통동 산28-1번지의외 13필지
- 면 적 : 89,841m²
- 기준가격 : 1,179,056천원(가 감정가 기준)

○ 건 물 (신 축)

- 연 면 적 : 4,605m² (디지털역사전시관외 9동)
- 기준가격 : 16,29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13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 (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 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17필지	92,288	1,807,063				
매입 (토지)	대	구평동 980	1,435	605,373	2013년 하반기	공공용지	경상북도 개발공사	조성 완가
	하천	장천면 오로리 1844-1	827	18,194	"	농촌체험장 공동육묘장 설치	구평동 453 부영305/206, 장진권	가감 정가
	하천	장천면 오로리 오로리 1847	185	4,440	"	"	광평동 310 이연도	"
	임	남통동 산28-1	80,251	850,660	2013년 하반기	역사문화디지 털센터건립	구미시 원평동 400-9 선산김씨종중	가감 정가
	임	남통동 산28-7	7,250	76,850	"	"	"	"
	유	남통동 237	529	56,867	"	"	"	"
	유	남통동 237-1	30	3,225	"	"	"	"
	유	남통동 238	347	37,302	"	"	"	"
	유	남통동 239	397	42,677	"	"	"	"
	유	남통동 240	73	7,847	"	"	"	"
	유	남통동 241	53	5,697	"	"	"	"
	유	남통동 242	62	6,665	"	"	"	"
	유	남통동 242-1	16	1,720	"	"	"	"
	전	남통동 246	635	68,262	"	"	"	"
	유	남통동 234	56	6,020	"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
	유	남통동 247	69	7,417	"	"	"	"
	구	남통동 397	73	7,847	"	"	"	"

2013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 (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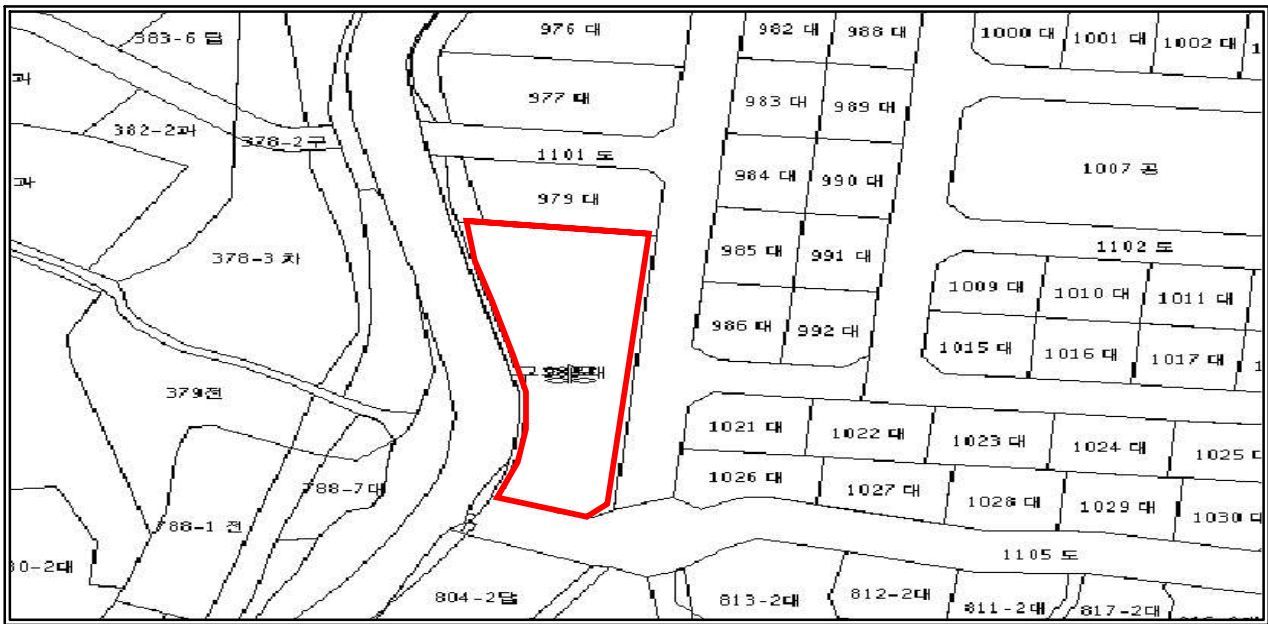
취 득 대 상 현 황

□ 재산의 표시 : 구평동 공공용지

○ 소재지 : 구미시 구평동 980번지

○ 면 적 : 1,435m²

□ 지적도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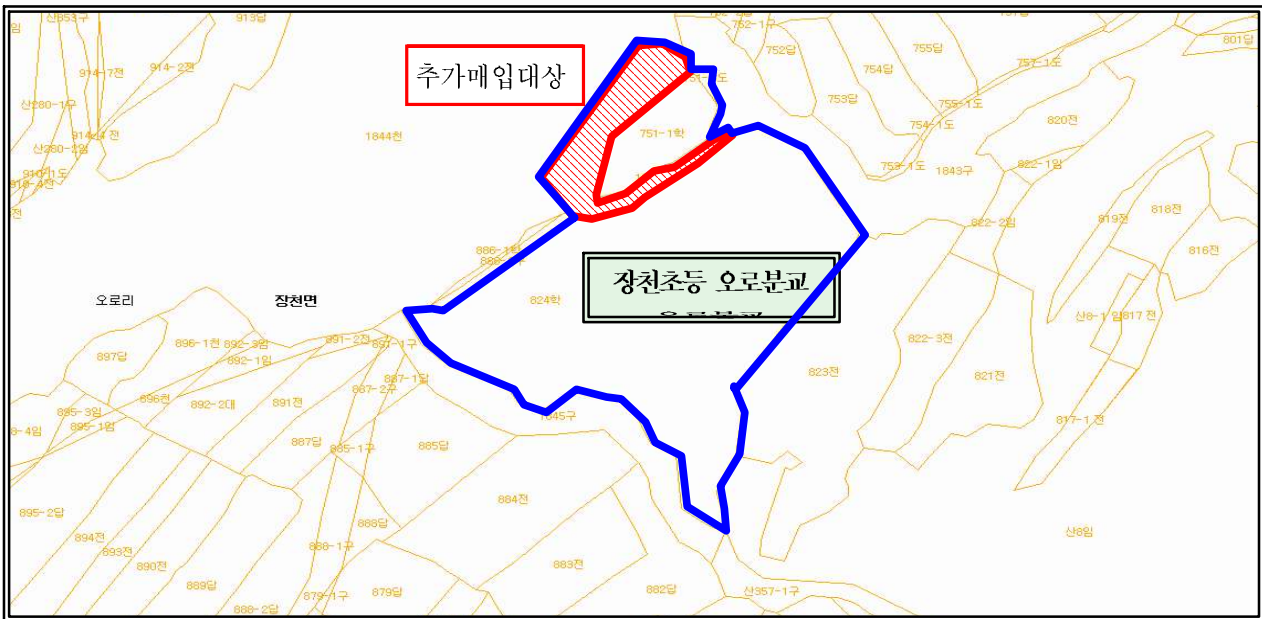
취득대상현황

□ 재산의 표시 : 구)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부지

○ 소재지 : 장천면 오로리 1844-1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012m²

□ 지적도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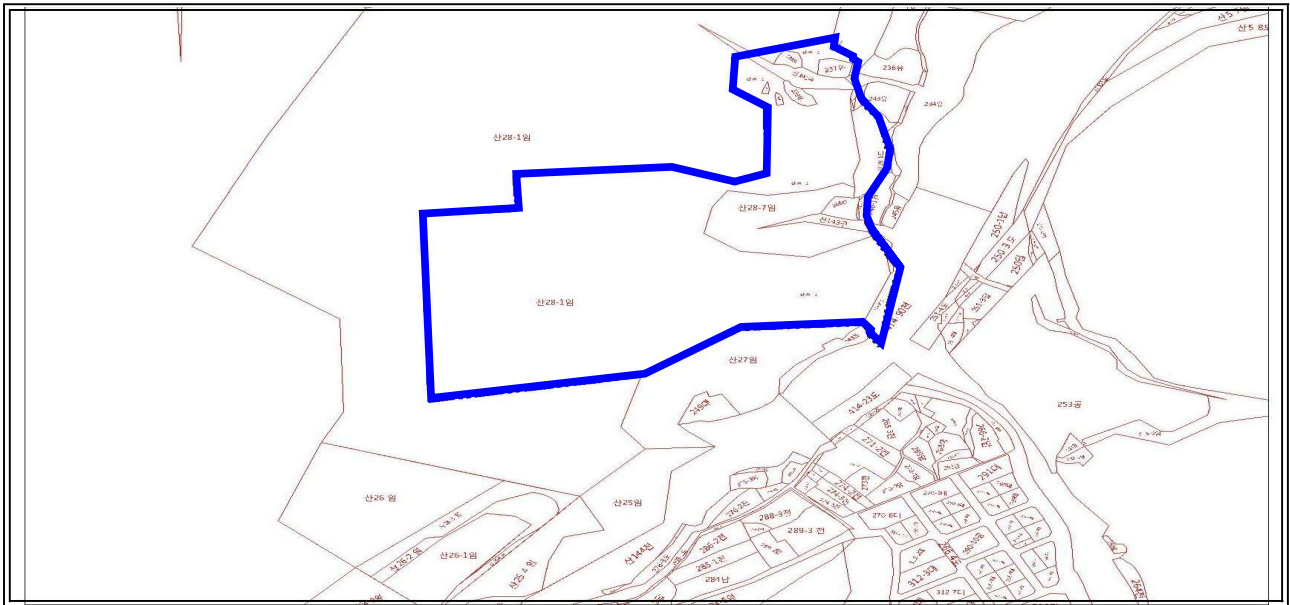


취 득 대 상 현 황

□ 재산의 표시 :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 소재지 : 구미시 남통동 산28-1번지의 13필지
- 토지면적 : 89,841m²
- 건물규모 : 4,605m²(연면적)
- 사업내용 : 디지털역사문화전시관, 디지털체험관, 디지털인문관 등

□ 지적도



□ 위치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 5. <생략>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심의회 의 업무)

- ① 심의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